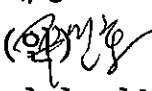


2018. 02. 08.

수 신 :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참 조 : 의사담당관
제 목 : 양재대로 방음벽 설치 반대에 관한 청원

위 청원을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따로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1. 청원서 3부(청원의 취지와 이유 및 요구의 주된 내용 명시)
2. 청원소개의견서 3부
3. 청원관련 참고자료 3부

- 청 원 인
 - 주 소 : 서초구 양재동 286-6
 - 성 명 : 주민호 (인) 
 - 의 756명 (연서자 명부 따로붙임)
 - 연락처 : 010-9002-1374

○ 소개의원 : 최 호 정



청원서

제목 : 양재대로 방음벽 설치 반대에 관한 청원

서울시는 강남지역의 동서간 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해 2016년 7월 3일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가 우선 개통된 이후, 미준공 구간인 8공구(서초구 우면동~과천시 주암동~강남구 수서동, 7.96km)연장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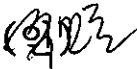
이 중 구룡지하차도(4차로, 770m)와 염곡동서지하차도(4차로, 640m)를 건설하면서, 두 지하차도 간의 지상 단절구간(약 280m)은 주민들의 도로소음민원 해소를 위해 방음벽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주민들은 양재대로 건너편 구룡산의 자연환경을 단절시키는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는 강한 반대의사를 나타내면서, 구룡지하차도와 염곡지하차도를 지하로 연결하자는 민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오랜 세월에 거쳐 누려온 자연환경의 수해를 박탈하면서 방음 효과도 확신하기 어려운 방음벽을 무리하게 설치하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운전자의 입장에서 약 1.7km의 짧은 구간을 지하차도와 지상구간, 지하차도 구간을 반복 운전하게 되면서 안전운전에도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지역주민 환경권과 운전자의 안전권을 고려해 현재 계획 중인 방음시설의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시공방법으로의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이에 청원을 드립니다.

○ 청원인

- 주소 : 서초구 양재동 286-6
- 성명 : 주민호 
외 756명 (연서자 명부 따로붙임)
- 연락처 : 010-9002-13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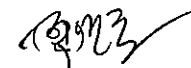

○ 소개의원 : 최호정



※ 작성시 유의사항

청원내용은 청원의 취지와 이유 및 요구의 주된 내용 명시

청원소개의견서

청원건명	양재대로 방음벽 설치 반대 청원서	
청원인	주소	서초구 양재동 286-6
	성명	주민호 
소개의원	최호정	
소개년월일	2018. 2. 08.	

소개의견

서울시는 강남지역의 동서간 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해 2016년 7월 3일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가 우선 개통된 이후, 미준공 구간인 8공구(서초구 우면동~과천시 주암동~강남구 수서동, 7.96km)연장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중 구룡지하차도(4차로, 770m)와 염곡동서지하차도(4차로, 640m)를 건설하면서, 두 지하차도 간의 지상 단절구간(약 280m)은 주민들의 도로소음민원 해소를 위해 방음벽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주민들은 양재대로 건너편 구룡산의 자연환경을 단절시키는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는 강한 반대의사를 나타내면서, 구룡지하차도와 염곡지하차도를 지하로 연결하자는 민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오랜 세월에 거쳐 누려온 자연환경의 수해를 박탈하면서 방음 효과도 확신하기 어려운 방음벽을 무리하게 설치하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운전자의 입장에서 약 1.7km의 짧은 구간을 지하차도와 지상구간, 지하차도 구간을 반복 운전하게 되면서 안전운전에도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지역주민 환경권과 운전자의 안전권을 고려해 현재 계획 중인 방음시설의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시공방법으로의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이에 청원소개합니다.